

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재개

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(국가교정제도의 확립)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
요령 제30조(인정취소 등)의 규정에 의거 인정정지 하였던 국제공인교정기관에 대
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인정재개를 공고합니다.

2011. 10. 19

한 국 인 정 기 구 장

기 관 명 (인정번호)	대표자 (법인등록번호) (사업자등록번호)	법인주소 (소재지)	인정재개분야 및 항목
한국유체기술(주) (KC03-168)	이토라 (170111-0234625) (514-81-46353)	법인주소 :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200-2 (사업장소재지 : 위와 같음)	전분야 (유체유동(209))

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 끝.